

교원연구보조비지급규정

1996.03.01.제정	1996.07.01.일부개정	1997.03.01.일부개정	1997.06.30.일부개정
2000.03.01.일부개정	2004.07.01.일부개정	2006.01.01.일부개정	2011.04.18.일부개정
2012.04.01.일부개정	<u>2012.04.01.일부개정</u>		

<교무팀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2.4.1.)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규정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12.4.1.)

제 3 조 삭제 (2011.4.18.)

제 4 조 (지급기준과 방법) ① 본 대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교직원보수규정 별표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.

② 삭제(2011.3.1.)

③ 연봉제를 적용하는 교원의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2.4.1.)

제 5 조 (예산) 연구보조비는 매년 예산 중 교비회계에서 책정한다.

제 6 조 (준용)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와 본 대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이전의 교원연구보조비는 이 규정으로 지급 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 4조 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